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자치행정과-15499
등록일자	2015.9.8.
결재일자	2015.9.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동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주현	임동호	옥종식	전결 09/08 이창훈		
협조자					

2015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계획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계획

- 구청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요부서 이용 독려
- 주요 이용기관(등기소, 금융기관 등) 및 이용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에 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강화
- 발급부서(동)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체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기타 활성화 방안(홍보 활성화, 담당공무원 교육, 유공자 표창 등)

점검계획

- 매월초 발급부서(동) 활성화 추진사항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상급기관 건의

2015. 9. .

강 남 구
(자 치 행 정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관련 규정 및 근거</p>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p>· 2015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계획(행정자치부 주민과-4124, 2015.8.27.)</p>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추진 경위</p>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p>· 추진경위 : 국회 결산심사시 지적</p>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예산 사항</p>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p>· 근거 : 해당사항 없음</p>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수혜자 및 범위</p>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p>· 대상 : 일반주민</p>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분야 별 검토사항</p> <p>[계속 : √] [신규 :]</p>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타 기관 사 례</p>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p>· 전국 공통 추진사항</p>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전문가 자 문</p>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p>· 해당사항 없음</p>																											

2015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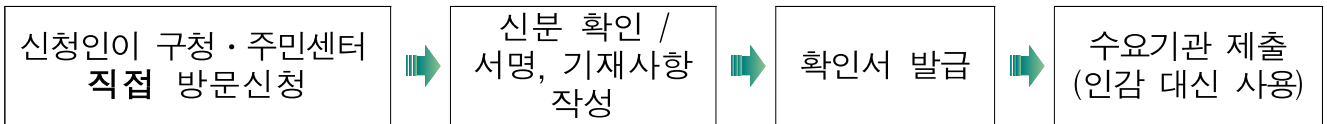
2012.12.1.부터 기존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하고자 함.

I 제도 개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으로써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 발급절차



□ 인감제도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 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대리발급 불가	○ 본인
3)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4)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증
5) 수요기관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상 확인

II 우리구 발급현황

【단위: 통, %】

연도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대비 발급률 (%)
2013년	925,026	9,009	0.97
2014년	916,847	13,663	1.49
2015년 (1.1.~8.31.)	652,961	13,702	2.1

* 전국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2013년 2.4% → 2014년, 2015년 상반기 3.1%

III 문제점

□ **교육 및 홍보,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이용계층,**

접수기관 모두 이용에 소극적

- 본 제도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부족 및 인감증명서에 비해 많은 기재 사항, 용도 사전 기재, 대리발급 불가 등의 불편함이 있음
- 민원창구의 적극적인 홍보 및 수요부서의 적극적인 사용 안내 필요
-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등 수요기관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공공기관 제출용만 적용되므로 이용**

확대에 한계

- 단계별 적용(안전행정부) : 2013. 8 정부자치단체 본부 → 2015년 정부자치단체 소속기관 → 2016년 공공기관 → 2017년 국회, 법원, 현재

IV

본인서명 이용 활성화 계획

- 연도별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목표 설정·운용
 - 2015년 10% → 2016년 15% → 2017년 20%
- 구청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요부서 이용 독려
 - 구청내 인감증명서 수요부서 파악 : 9. 15.(화)한
 - 수요부서 교육 및 이용 독려
 - 일 시 : 2015. 9월 중
 - 내 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및 인감증명서 대체 유도, 민원 발급 안내서류에 명시 요청 등
 - ※ 특히 차량등록 부서(자동차민원과)의 경우 이용률 적극 확대
 - 현재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률 1.13% 수준이므로 자체 목표 설정하여 이용률 적극 확대 노력
 - * 행정자치부 차량등록 부서 이용률 연내30% 설정
- 주요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강화
 - 등기소, 금융기관 등에 우선 사용 권장(공문 발송)
 - 부동산 등기, 대출 신청 등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 공인중개사, 행정사, 건축사 사무소 등에 대한 중점 홍보 실시
 - 관련 부서를 통해 협회 등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및 이용 독려
 - 개별 업무신고 시 안내문 배부 등 홍보

□ 발급부서(동)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담당공무원 회의 개최

- 일 시 : 2015. 9월 중
- 내 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자체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계획수립 : 2015. 9월 중
- 주요내용
 - 동별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목표 10% 설정
 - 인감 최초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집중 안내
 -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독려
 - 인감 발급창구 및 민원필기대 등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문과 작성예시 견본 부착
 - 관내 금융기관 등 수요기관 파악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협조 공문 발송 및 협의 추진
 - 통장회의 및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 추진 등

※ 동 평가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인감대비 발급률) 반영 예정

□ 기타 활성화 방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활성화

- 우리구 홍보매체 활용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적극 홍보
- 반상회보 등을 통한 주민 홍보
- 서명확인제도 이해를 위한 홍보물 배포

※ 행정자치부에서 홍보 영상물, 리플렛 등 제작하여 배부(11월말 예정)

○ 하반기 중 본인서명사실확인 담당공무원 교육(법령 개정사항 등)

- 2015. 9. 21.(월) 13:30~16:30, 서울시청 대강당, 270여명

※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교육 후 동 담당공무원 전달교육 실시 예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사무편람 배포

- 행정자치부에서 2012년 이후 법령·제도 개선사항 반영하여 제작 (10월말 배포예정)

○ 본인서명 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

- 연말 본인서명발급확인서 발급실적 및 제도개선 등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

※ 행정자치부 본인서명 업무유공자 표창 및 부진기관 조치사항

- 표창대상 및 인원 : 우수 지자체 및 유공공무원 총78개
 - 기관표창 12개(시도·시·군·구 각3), 개인표창 66개(시도별 평균4)
- 시도별로 배정하되, 추진실적에 따라 우수·부진 시도 간 조정
 - 목표율 5%에 미달하는 하위 5개시도 減 1(목표율 달성시 제외),
→ 차량등록 우수기관(2개) 및 발급률 상위 3개시도 增 1
- 본인서명 접수거부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공문 협조
- 발급률이 낮은 기관을 점검·분석하여 컨설팅 지원 추진
- 컨설팅 지원
 -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추진방안 마련
 - 추진상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제도·시스템 개선 건의
 - 매월 진단 및 컨설팅 결과를 지자체(읍·면·동) 환류 등

V 점검 계획

○ 추진방향

- 발급부서(동)별 발급률 부진 원인 및 문제점 진단
-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시스템 개선 건의사항 수렴 등
- 진단·분석결과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상급기관 건의

○ 점검개요

- 기간 : 2015. 9월 ~ 12월(매월 초 실시)
 - 대상 : 전월 발급률 부진 또는 우수 동(부서)
 - 점검내용
 - 동(부서)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상황
 - 차량등록부서 등 수요부서의 본인서명 이용실태
 -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이용계층에 대한 홍보·안내 등
- ※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발급률 부진 지자체에 대한 합동 점검 실시

VI 행정사항

□ 자치행정과

- 활성화 추진계획 제출(자치행정과 →서울시 자치행정과)
- 수요부서 및 발급부서(동) 교육 실시 : 2015. 9월중
- 관련 부서 협조받아 주요 이용기관 등에 안내 및 홍보 공문 발송
- 매월 실적 점검

□ 발급부서(22개동주민센터, 민원여권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제출 : 9.16(수)한
- 관내 이용기관(금융기관 등) 파악하여 인감증명서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협조
- 월간실적,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안 등 제출 : 매월 3일까지(별도 공지전까지)

□ 수요부서(자동차민원과 등)

- 안내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명시 및 대민홍보 철저

붙임 [참고1] 우리구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참고2] 민원불편 제도개선사항

[참고3] 본인서명 관련 지자체 점검사항

[참고4] 시도별 본인서명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참고5]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용도별 기재사항(예시)

참고 1

우리구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현황

(기간 : 2015.1월 ~ 8월, 단위 : 통)

구 분	인감대비(%)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		
			합계	본인서명	전자본인
강남구 소계	2.09	2.09	656,781	13,702	13,681
강남구	2.75	2.75	34,547	950	950
신사동	1.74	1.74	28,783	500	500
논현1동	2.97	2.97	42,224	1,253	1,251
논현2동	2.06	2.06	35,447	731	730
압구정동	1.19	1.19	30,041	356	356
청담동	1.34	1.34	32,525	435	433
삼성1동	2.64	2.64	35,113	926	926
삼성2동	2.02	2.02	53,354	1,079	1,075
대치1동	0.77	0.77	17,959	139	138
대치2동	1.82	1.82	30,075	548	548
대치4동	2.42	2.42	27,858	674	673
역삼1동	3.4	3.4	85,626	2,909	2,907
역삼2동	2	2	42,977	858	857
도곡1동	1.26	1.26	18,304	230	228
도곡2동	0.97	0.97	30,275	293	293
개포1동	0.85	0.85	13,700	116	116
개포2동	0.94	0.94	12,952	122	121
개포4동	0.99	0.99	14,418	143	143
일원본동	0.79	0.79	12,125	96	94
일원1동	2.12	2.12	10,774	228	228
일원2동	1.4	1.4	12,718	178	178
수서동	0.99	0.99	16,654	165	165
세곡동	4.22	4.22	18,332	773	771

참고 2

민원불편 제도개선사항

< 제도개선 완료사항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축소

○ 현재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인 경우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됨**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제1호~제8호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 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농협은행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0	

⇒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 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농협은행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미기재)
	주소 (미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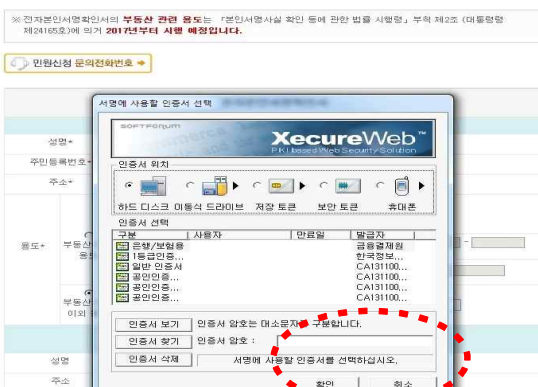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 본인확인 인증절차 축소

○ 현재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비밀번호의 3단계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나

-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만 거치면 됨(비밀번호 생략)

①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② 전화 인증



③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에 표시항목 추가

-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증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 위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위임 처리하는 경우의 불편사항을 해소함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사용용도	
20 년 월 일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사용용도	
전자본인서명확인 서제출기관	
위임 받은 사람	
20 년 월 일	

□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및 서식(처리절차) 개선

- 그 외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수요처 → 제출기관, 수임인 → 위임 받은 사람)하고
- 각종 서식에 중복된 처리절차를 삭제하여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함

< 앞으로 개선 검토사항 >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처를 은행 등으로 확대

□ 현 실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행정·공공기관에만 제출*할 수 있어, 주로 이용하는 은행 등이 제외되어 제도 정착에 한계

*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

(계획) 2016년 공공기관 → 2017년 법원(등기소) 등 국가기관

□ 개선방안

- 대규모 수요처인 은행 등도 행정정보공개이용 등을 통하여 이용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확대 추진 검토

*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나, 재산권 변동을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

- ▶ 2017년 우선적으로 18개 시중은행에 시범 운영 후 확대 추진, 관련 법령 개정 시 명칭도 알기 쉽고 간결하게 변경 추진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을 전산입력 처리

□ 현 실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위임받은 사람 등을 본인이 기재하도록 하여 민원불편으로 발급률 저조

□ 개선방안

- 민원인이 용도 등 기재할 사항을 담당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기재된 사항을 본인이 확인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개선

- 본인서명은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확인하는데 반하여 서명은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원과 기재사항의 전산입력에 따른 세부적인 방법* 협의

*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홍길동” 등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인하 시한 연장

□ 현 실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인감과 같이 600원이지만 발급률 향상을 위해 2015년12월 31일까지는 300원으로 인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입 3년차인 현재까지 인감대비 발급률이 3%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수료 인하 시한 연장 필요

□ 개선방안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은 시스템 구축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적용*함
 - * (현재) 중앙·지방→(계획) 2016년 공공기관, 2017년 법원 등 국가기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구축되어 5년이 되는 2017. 12. 31.까지 발급 수수료 인하 시한을 2년간 연장 추진
 - ▶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

4. 외국인 등의 본인서명 발급기관을 동까지 확대

□ 현 실태

- 외국인등록자와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외국인 업무를 관장하는 시·구, 읍·면에서만 발급
 - * 발급기관: (내국인) 시·군·구, 읍·면·동→(외국인) 시·구, 읍·면

□ 개선방안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외국인 등록자 등의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함
- 법무부와 항공이용 협의가 완료되면 외국인등록자 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내국인과 같이 동까지 확대
 - ▶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

5. 법률 개정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 현 실태

- 개정 민법상 성년·한정후견제 시행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필요
- *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사항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확인서 발급 가능

□ 개선방안

- 한정치산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이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법정대리인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전산관리

□ 현 실태

-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용도 등을 직접 수기로 적는 불편 초래
- ※ 인감의 경우 본인발급시에는 인감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위임발급시에는 우무인을 위하여 수기로 작성 관리

□ 개선방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발급대장에 신청인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이 적은 내용은 전산으로 입력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
- ▶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급대장 전산시스템 개발 사용

< 시도 점검표 >

항 목	추진내용	비고
<p>활성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의 활성화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 공무원의 관심도 - 계획의 적정성(우수사례 전파 등) - 시·군·구 시달 여부 ○ 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공무원(차량등록, 인·허가 등 관련부서) - 시·군·구(읍·면·동) 공무원 ○ 주요 이용기관 및 이용계층에 대한 안내·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한 제도 안내 · 공문 발송, 홍보·교육, 회의·간담회 개최 등 - 차량등록사업소 발급률 모니터링 및 민원 안내 ※ (중점관리 대상)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및 차량등록사업소, 금융기관 등 ○ 시·군·구 발급실적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점검계획 수립 여부 - 점검결과 컨설팅 지원 실적 - 우수사례 발굴·공유·전파 실적 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 거부기관 조치 여부 ○ 제도개선 건의 사항 발굴 여부 등 	

< 시·군·구 점검표 >

항 목	추 진 내 용	비고
<p>활성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의 활성화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 공무원의 관심도 - 계획의 적정성(우수사례 공유·전파 등) - 관련 실·과* 및 읍·면·동 시달 여부 * 차량등록사업소, 각종 인·허가(신고) 부서 등 ○ 관내 공인중개사·법무사·행정사 및 금융기관·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대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 발송, 홍보·교육, 회의·간담회 개최 등 - 차량등록사업소 발급률 모니터링 및 현지 점검 ○ 통·리·반장 교육 및 각종 기회교육·회의시 안내 ○ 홍보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입간판, 리플렛, 기타() ○ 우수 사범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p>자체 활성화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교육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서명서실확인서 수요부서 공무원 * 특히, 차량등록부서, 위생과, 지적과 등 - 읍·면·동 등 발급기관 공무원 ○ 인감 등록신고 및 개인 신고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여부 ○ 우수 수범사례 공유 및 전파 실적 	

참고 4

시도별 본인서명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시도별	추진내용
<p>광주광역시</p>	<p>시청, 구청에서 발급실적을 모니터링 하여 수시 이행 독려 인감도장 변경 시 본인동의하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체험 민원창구에 본인서명 홍보 안내문 제작 비치하여 발급 유도 차량등록부서, 부동산중개업소, 금융기관 등에 공문 협조 * 북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승인 및 이용부서 순회교육</p> <p>(개선할 사항) 발급처 독려 보다 수요처에 대한 사용 독려, * 차량등록부서나 은행에서 인감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음 본인서명이 편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TV홍보</p>
<p>인천광역시</p>	<p>(동구) 구청 민원실, 교통과, 동 주민센터에 제도 홍보·안내 - 동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 및 인감 최초 신고 시 안내 - 인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서명 발급 유도</p> <p>(개선할 사항) 은행, 케이탈 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중앙차원의 협조 요청 -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각종 민원관련 신청서식 개선 (구비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함께 표시)</p> <p>(서구) 수요처에서 서류에 도장 날인 등 위임하여 민원처리 불편 (인감증명제출시 도장 날인, 본인서명제출시 본인이 직접 서명)</p> <p>주기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 제도인식 확산에 집중 본인서명 발급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 안내 - 인영 재등록자, 인감 미등록자중 인감발급 신청자</p> <p>자동차 등록대행사를 대상으로 본인서명 발급 홍보 - 자동차 매매상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상주하는 대행업자 자동차등록사업소 담당자 교육, 거부업체에 대한 제도 안내</p>

시도별	추진내용
대전광역시	(동구) 동 행정평가에 본인서명 발급실적 평가 항목 추가 - 동 담당자가 매주 관심을 갖고 발급실적 지속 관리
	(서구) 중고차매매상사 관계자 홍보활동 강화로 실적 증가 - 중고차거래시 대표자 인감증명을 본인서명 대체(월50건) 타지역 거주자의 인감도장 변경시 본인서명제도 이용 권유
	(대덕구) 은행을 대상으로 인감 제출서류 사내규정 개정 독려 차량 신규등록 및 이전 시 본인서명 활용 홍보 및 직원 교육
경기도 김포시	<p>2015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홍보에도 본인의 서명 대조로 오인 이용에 소극적 - 발급 목표률(5%) 설정, 지속적 모니터링, 차량등록 접수율 향상 - SNS, 반회보, 회의 인쇄물, 경기도 버스 송출 등 지속적 홍보 - 읍·면·동 동아리 이용한 직원교육, 발급부진 기관 현장 점검 등 - 이용기관(협회, 은행)에 협조공문 예시안 작성 지속적 이용 안내 - 본인서명 리플렛 제작 홍보(인감과 비교, 안전성, 편리성 홍보) - 용도에 따른 기재사항 예시안 작성·활용 <p>2015년 상반기 본인서명 활성화 추진현황 보고(발급률 5.63% 달성)</p>
강원도	(태백시) 동 평가지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 반영 - 자동차 공동명의용 인감 필요시 본인서명 제출 의무화 - 차량매도용 본인서명 제출 안내, 수임인 기재생략 발급편의 제공 2015년 민원행정분야 우수동 선정 시상계획 (3개동 포상금 지원)
	(화천군) 인감증명 발급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유도 - 차량등록, 보상, 계약부서 증빙서류에 본인서명 제출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장 회의 및 반사회 등에 집중 홍보
	(인제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사업 제출서류에 인감대신 본인서명 제출, 용도별 기재사항 샘플 작성 배포 - 전광판, 동영상 게시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 유도
충청남도	<p>차량등록대행업체에 수수료 감면 등을 안내하여 발급 유도</p> <p>(서산시) 인감 변경 및 전입신고와 동시 인감 발급시 본인서명 이용</p> <p>(당진시) 차량매매시 인감대신 본인서명을 제출하면 차량용 방향제 제공</p> <p>연말 읍면동 평가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p> <p>(서천군) 외국인근로자의 금융거래 증가에 따라 본인서명 발급 안내</p>

시도별	추진내용
전라북도	<p>(정읍시) 제도도입 초기에 주요 수요처를 방문, 홍보효과 거양 - 법무사, 은행, 법원, 농어촌공사, 차량등록, 건설과 보상업무, 회계과 계약업무 담당자 방문 면담 및 구비서류 변경 안내 ※ 정읍법원의 본인서명 거부를 행자부를 통하여 민원 해결</p> <p>특정시기에 대량의 인감증명 발급 수요시 선제적 대응 중요 - 공동주택 신축분양시 분양사무소를 방문 구비서류 변경 안내 - 소방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손실보상에 본인서명 제출 공문 - 아파트 설계변경 동의 다량의 인감신청 소요발생 정보 공유</p> <p>기관장(종합민원과장)이 관심을 갖고 이행상황을 수시점검 독려 - 분기별, 인사이동 후 본인서명 이용 활성화 협조 공문 발송 - 읍면동 본인서명 발급실적 일일보고 및 월별 실적평가 통보</p> <p>본인서명 업무담당자의 경험 축적 및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 - 본인서명 발급 유도에는 업무경험 축적에 따른 자신감이 중요 - 상황별 적절한 안내요령에 시간과 경험 필요, 담당자 전보 제한 - 담당직원의 실천 노력이 관건으로 실적우수 읍면동 공무원 표창</p> <p>▶ 공공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만 요구, 행자부에서 법원, 은행연합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산하기관 구비서류 안내문을 변경하도록 협조 요청</p>
	<p>(무주군) 본인서명 발급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실시 민원부서(차량등록, 등기이전)와 연계한 본인서명 발급 협조 - 농협 면세유 혜택을 위해 차량을 공동명의로 이전 등록시 인감대신 본인서명 첨부 및 수수료 인하로 민원인 만족 -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본인서명 제출 당부 본인서명 발급실적을 매주 읍면동에서 군에 이메일 보고 -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변경시 안내 소홀 우려 실적 관리</p>
전라남도	<p>(무안군) 읍면 민원담당 간담회 개최, 목표량 상향 조정(3.5%→5%) - 담당자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발급실적 차이, 실적 점검 및 독려 주민홍보 강화, 전단지, 반상회 자료 배포, 이장 회의 시 발급 안내</p> <p>행정기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수요부서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위한 서식 및 안내문 변경 요청 - 차량이전, 토지보상업무, 보조사업 정산시 본인서명 이용 안내</p> <p>읍·면사무소 방문 시 민원인 인식 제고를 위한 1:1 홍보 추진 법무사,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대상 본인서명 이용 홍보활동 전개</p>

시도별	추진내용
경상북도	<p>(상주시) 대민홍보를 통한 점진적 인식개선과 수요처 홍보 기관내 제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으로 대체하도록 유도 - 요식업 명의변경신청, 태양광발전 설치시 보조금 신청, 토지 보상 등 수요처가 행정기관일 경우 본인서명 제출 협조 - 민원인 송부 공문, 안내문의 필요서류에 본인서명 기재</p> <p>종합민원실의 편의성을 활용하여 본인서명 발급 유도 - 농협, 대구은행 시금고에 본인서명 제출 안내 협조 요청 - 민원실내 차량등록이나 이전, 폐차시 본인서명 발급 유도</p> <p>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홍보 - 소송이나 근저당 설정 관련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서류를 갖추는 민원인이 많은 점을 감안 중점 홍보</p> <p>민원창구에서 인감 신규 등록, 인감 변경, 인감발급 요청자를 대상으로 본인서명 발급 유도</p>
경상남도	<p>본인서명 발급실적을 2015년 시·군 합동평가 지표 반영 주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강화 - 서명확인제도의 안전성, 편의성 장점, 처리절차 등 안내 - 차량매매업체, 공인중개사, 법무사, 금융기관 및 보상관련 부서, 차량등록부서, 선박·건축신고 부서 등 대상</p> <p>(의령군) 제도 도입에 따른 공무원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직원 발급 체험 실시(141명)</p> <p>(양산시) 행정용 소봉투를 활용한 본인서명 홍보(4천매) - ‘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편리하게’ 문구 인쇄</p> <p>(산청군) 행정기관내에서부터 본인서명 제도 정착 - 수요부서 및 전직원 대상 본인서명 발급 참여 협조 - 읍면 행정실적심사와 민원 행정실적 평가항목에 반영 - 매월 읍면별 발급률 모니터링 발급부진 읍면 독려</p> <p>인감최초 신고 및 변경신고시 본인서명 집중 안내</p> <p>차량등록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토록 안내 - 차량등록 및 읍면 민원창구에 안내문 비치 - 자동차 영업소, 중고차 매매상에 집중 홍보 실시</p>
제주특별자치도	<p>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리후렛 제작 배부 자동차매매업체에 본인서명 이용 협조 공문 발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이용기관 면담 - 제주시 종합민원실, 상양동, 화북동, 제주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주기적 전송으로 발급률 독려</p>

I. 부동산 관련 용도 예시

(1) 소유권 이전

1. 매매	23
2. 증여	24
3. 상속	25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공동으로 상속 받을 경우)	25
②. 상속을 포기할 경우	27

(2) 제한물권 설정

1. 근저당권 설정	28
2. 전세권 설정	29

(3) 그 밖의 용도

1. 가등기설정	30
2. 가등기말소	31
3. 근정당권 말소, 전세권 말소	32

II. 부동산 관련외의 용도 예시

1. 공탁금 출금 청구	33
2. 자동차 신규 구매(할부)	34
3. 자동차 이전등록	35
4. 영업권 양도	36
5. 보험금 청구	37
6. 사망자 인우보증	38
7.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39
8. 아파트 분양권 매도 시(등기소 제출 안함)	40
9. 집을 구매 시(등기소 제출 안함)	41

※ 재외국민((미등록자 및 출국자(행정상관리주소 변경))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세무서장 경유

I. 부동산 관련 용도

(1) 소유권 이전

1. 매매


공정행위서비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명품 시행령(별지 제 12호서지)
 문서확인번호 : 4977-1014-1227-538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간오피스)		
용도	부동산관련 용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매수인을 기재
	거래상대방 정보	성명(법인명) : 나애리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890105-2222222 주소 :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	
부동산관련 외의 용도	<input type="checkbox"/> 빈칸		
위임받은 사람	성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영표 (법무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7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년 08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 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윽한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비주민등록 소재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 용도, 위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란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란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법무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법무사)
-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명품, 제 13조제 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2. 증여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명품 시행령[별지 제 2호서지] 문서확인번호 : 4977-1014-1227-5380		*이 용지는 워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간오피스텔)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용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동기설정, 가동기말소 등)	증여 받는 사람을 기재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 홍길영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030205-3234567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간오피스텔)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input type="checkbox"/> 빈칸	
위임받은 사람	성명 : 이영표(법무사)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7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15년 08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 의 사 항			
1.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3. 용도, 위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기관등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란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중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000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취소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에는 이상필자 또는 한정직산자 표시와 영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50g/㎡)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명품, 제 13조제 2항 각호 외의 부분외에 등록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속 기재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속 인감을捺인한 것으로 본다.			

3. 상속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①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상속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할 필요 없음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977-1014-1227-5380		*이 용지는 화소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공)		
부동산 관련 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유류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부동산 관련 정보 지번상주소장소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	부동산 관련 정보 지번상주소장소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
	부동산 관련 의의용도 빈칸	부동산 관련 정보 지번상주소장소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	
위임장 사실	상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영표(법무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소(자택용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7	수수료	300 원
위 선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15년 08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한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본,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본부 심의 기록)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미주된(등록 제외)지역의 경우에는 영문본초본, 국내거소신고본 한 자로 기재할 경우 영문본초본, 국내거소신고본초본, 외국인등록 영문본초본을 주민등록본초본에 붙입니다. 3. 용도, 취입 받은 사람(한인 신청인이 외국 국상인)과,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인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와 "지방공단", 「관공리법」 제 10조 제 1항 법률, 제 88조 제 1항 제 8호의 자 또는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본초본과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 됩니다. 5. 취입 받은 사람(한인)은 다른 사람에게 취입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제출 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라 취입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표합니다. 다만, 법무사, 법무사 영 자택용 소지자에게 취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자택용 소지자의 성명과 자택용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0000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취입 받은 사람 영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 확인서를 부정 기재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직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표합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제 13조 제 2항 각 호의 자와 제 14조 제 2항 제 2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확인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을 관련 서류를 인장을 달인 것으로 본다.			

①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별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거래상대방 등 사항



1	성명(법인명)	● 홍길삼	주민등록번호	831201-1111111
	주 소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 ●		
2	성명(법인명)	● 홍길오	주민등록번호	750530-1111111
	주 소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 ●		
이 하 여 백				


[다음장없음]

② 상속을 포기 할 경우

<p>■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p> <p>문서확인번호 : 4677-1113-1279-559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사실확인서</p>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간오피스텔)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p>[]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p>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빈 칸	빈 칸
	주소	빈 칸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 서울가정(지방)법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용 ●		
위임받는 사람	성명	빈 칸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 칸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1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		2015년 08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사항			
<p>1. 서명은 작성자 소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p> <p>2. 미주민등록 지체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p> <p>3. 용도, 위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4. 부동산 관련 용도란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 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법」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은행, 모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p> <p>5.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법무사)</p> <p>6.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7. 비고란에는 이혼증서 또는 한정직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p>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제 15조제 2차 적용 전자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상당 관련 서면식 체결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상당 관련 서면식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p>			

(2) 제한물권 설정

1. 근저당권 설정


공인서명서비스

■ 공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거위)
 문서확인번호 : 4977-1014-1227-538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공)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담보대출 받는 은행명을 기재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실명(법인명) : 신한은행 거래상대방 등 : 주소 :	
위임받는 사람	실명 : 이영표 (법무사) 주소(자력증 소지가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7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15년 08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외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 용도, 위임 받는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인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취약회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란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임 받는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는 사람의 실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실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실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법무사)
-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는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 (복수용지 80g/㎡)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각종 전자서명 체계에 등록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번호, 법인주소는 기재하지 않음

2. 전세권 설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영문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977-1014-1227-538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불런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을 기재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성명(법인명) : 설용도 거래상대방 등 : 주소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	
위임받는 사람	성명 이영표(법무사) 주소(자재중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7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15년 08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범부 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등록표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3. 용도, 위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 도 됩니다. 5.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중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란에 자격중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쳐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그런데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책임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영문, 제 12조에 따라 각종 신청과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의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3) 그 밖의 용도
1. 가등기 설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p>■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p> <p>문서확인번호 : 4977-1014-1227-5380 *이 용지는 워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공신발행서비스</p>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부동산 관련 용도</td> <td> 설명(범인명) ● 설용도 거래상대방 등 주소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 </td> <td>주민등록번호(범인등록번호)</td> <td>780325-1111111</td> </tr> <tr> <td>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td> <td colspan="3">빈칸</td> </tr> </table>	부동산 관련 용도	설명(범인명) ● 설용도 거래상대방 등 주소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	주민등록번호(범인등록번호)	780325-1111111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빈칸	
부동산 관련 용도	설명(범인명) ● 설용도 거래상대방 등 주소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	주민등록번호(범인등록번호)	780325-1111111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빈칸							
위임받은 사람	설명 ● 이영표(법무사)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7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 2015년 08월 11일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p>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그밖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3. 용도, 취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인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공제기구"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용직원칙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취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취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중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취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취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000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취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표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m ²)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제 13조에 따라 다른 필체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인감증명서로 대체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 권리자를 기재

2. 가등기 말소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화인번호 : 4977-1014-1227-5380 *이 용지는 취소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불면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부동산관련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780325-1111111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설용도 주소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	
위임받는 사람	성명 이영표(법무사)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7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 2015년 08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범주 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3. 용도, 취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인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관공리법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취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취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취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취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취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취소·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직권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재

3. 근저당권 말소, 전세권 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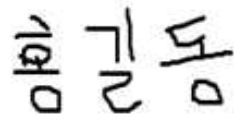
(인감, 본인서명 불요하나 민원인이 요구하면 발급)

<p>■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p> <p>본서확인번호 : 4977-1014-1227-538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사실확인서</p>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간오피스텔)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불린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부동산 관련 용도</td> <td> 성명(법인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용도 </td> <td>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td> </tr> <tr> <td>거래상대방 등</td> <td colspan="2">주소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td> </tr> </table>	부동산 관련 용도	성명(법인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용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거래상대방 등	주소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		
부동산 관련 용도	성명(법인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용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거래상대방 등	주소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4(대흥동)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빈란							
위임받은 사람	성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영표 (법무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7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년 08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범부 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민등록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3. 용도, 취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인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진흥법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란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취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취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행 중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취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취임하는 경우에는 신청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취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에는 이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p><small>「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제 13조제 2항에 따른 설치와 관련하여 등록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등본인 서면식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등본인 서면식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small></p>								

II. 부동산 관련외의 용도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사용 용도를 자세하게 기재)


1. 공탁금 출금 청구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677-1113-1279-559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간오피스텔)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소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value="빈란"/>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1234호 공탁금 출금 청구 ●			
위임받는 사람	성명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소(자괴중 소지가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input type="text" value="빈란"/>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1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		2015년 08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소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채국인등록자는 채국인등록표, 국내거수인표자는 국내거수인표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이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수인표를 한 채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수인표번호를, 재국인의 경우에는 채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3. 용도, 위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법」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등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중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중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영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취소 발표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제 13조에 따라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등록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인감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신규 구매(할부)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12호서지] 문서화인번호 : 4677-1113-1279-559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2015년 08월 10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간오피스텔)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동기설정, 가동기압소 등)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괴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1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15년 08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민등록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3. 용도, 위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 기재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은행, 모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 됩니다. 5.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중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표면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제 12호서지 제4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 제31항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제36항 제37항 제38항 제39항 제40항 제41항 제42항 제43항 제44항 제45항 제46항 제47항 제48항 제49항 제50항 제51항 제52항 제53항 제54항 제55항 제56항 제57항 제58항 제59항 제60항 제61항 제62항 제63항 제64항 제65항 제66항 제67항 제68항 제69항 제70항 제71항 제72항 제73항 제74항 제75항 제76항 제77항 제78항 제79항 제80항 제81항 제82항 제83항 제84항 제85항 제86항 제87항 제88항 제89항 제90항 제91항 제92항 제93항 제94항 제95항 제96항 제97항 제98항 제99항 제100항 제101항 제102항 제103항 제104항 제105항 제106항 제107항 제108항 제109항 제110항 제111항 제112항 제113항 제114항 제115항 제116항 제117항 제118항 제119항 제120항 제121항 제122항 제123항 제124항 제125항 제126항 제127항 제128항 제129항 제130항 제131항 제132항 제133항 제134항 제135항 제136항 제137항 제138항 제139항 제140항 제141항 제142항 제143항 제144항 제145항 제146항 제147항 제148항 제149항 제150항 제151항 제152항 제153항 제154항 제155항 제156항 제157항 제158항 제159항 제160항 제161항 제162항 제163항 제164항 제165항 제166항 제167항 제168항 제169항 제170항 제171항 제172항 제173항 제174항 제175항 제176항 제177항 제178항 제179항 제180항 제181항 제182항 제183항 제184항 제185항 제186항 제187항 제188항 제189항 제190항 제191항 제192항 제193항 제194항 제195항 제196항 제197항 제198항 제199항 제200항 제201항 제202항 제203항 제204항 제205항 제206항 제207항 제208항 제209항 제210항 제211항 제212항 제213항 제214항 제215항 제216항 제217항 제218항 제219항 제220항 제221항 제222항 제223항 제224항 제225항 제226항 제227항 제228항 제229항 제230항 제231항 제232항 제233항 제234항 제235항 제236항 제237항 제238항 제239항 제240항 제241항 제242항 제243항 제244항 제245항 제246항 제247항 제248항 제249항 제250항 제251항 제252항 제253항 제254항 제255항 제256항 제257항 제258항 제259항 제260항 제261항 제262항 제263항 제264항 제265항 제266항 제267항 제268항 제269항 제270항 제271항 제272항 제273항 제274항 제275항 제276항 제277항 제278항 제279항 제280항 제281항 제282항 제283항 제284항 제285항 제286항 제287항 제288항 제289항 제290항 제291항 제292항 제293항 제294항 제295항 제296항 제297항 제298항 제299항 제300항 제301항 제302항 제303항 제304항 제305항 제306항 제307항 제308항 제309항 제310항 제311항 제312항 제313항 제314항 제315항 제316항 제317항 제318항 제319항 제320항 제321항 제322항 제323항 제324항 제325항 제326항 제327항 제328항 제329항 제330항 제331항 제332항 제333항 제334항 제335항 제336항 제337항 제338항 제339항 제340항 제341항 제342항 제343항 제344항 제345항 제346항 제347항 제348항 제349항 제350항 제351항 제352항 제353항 제354항 제355항 제356항 제357항 제358항 제359항 제360항 제361항 제362항 제363항 제364항 제365항 제366항 제367항 제368항 제369항 제370항 제371항 제372항 제373항 제374항 제375항 제376항 제377항 제378항 제379항 제380항 제381항 제382항 제383항 제384항 제385항 제386항 제387항 제388항 제389항 제390항 제391항 제392항 제393항 제394항 제395항 제396항 제397항 제398항 제399항 제400항 제401항 제402항 제403항 제404항 제405항 제406항 제407항 제408항 제409항 제410항 제411항 제412항 제413항 제414항 제415항 제416항 제417항 제418항 제419항 제420항 제421항 제422항 제423항 제424항 제425항 제426항 제427항 제428항 제429항 제430항 제431항 제432항 제433항 제434항 제435항 제436항 제437항 제438항 제439항 제440항 제441항 제442항 제443항 제444항 제445항 제446항 제447항 제448항 제449항 제450항 제451항 제452항 제453항 제454항 제455항 제456항 제457항 제458항 제459항 제460항 제461항 제462항 제463항 제464항 제465항 제466항 제467항 제468항 제469항 제470항 제471항 제472항 제473항 제474항 제475항 제476항 제477항 제478항 제479항 제480항 제481항 제482항 제483항 제484항 제485항 제486항 제487항 제488항 제489항 제490항 제491항 제492항 제493항 제494항 제495항 제496항 제497항 제498항 제499항 제500항 제501항 제502항 제503항 제504항 제505항 제506항 제507항 제508항 제509항 제510항 제511항 제512항 제513항 제514항 제515항 제516항 제517항 제518항 제519항 제520항 제521항 제522항 제523항 제524항 제525항 제526항 제527항 제528항 제529항 제530항 제531항 제532항 제533항 제534항 제535항 제536항 제537항 제538항 제539항 제540항 제541항 제542항 제543항 제544항 제545항 제546항 제547항 제548항 제549항 제550항 제551항 제552항 제553항 제554항 제555항 제556항 제557항 제558항 제559항 제560항 제561항 제562항 제563항 제564항 제565항 제566항 제567항 제568항 제569항 제570항 제571항 제572항 제573항 제574항 제575항 제576항 제577항 제578항 제579항 제580항 제581항 제582항 제583항 제584항 제585항 제586항 제587항 제588항 제589항 제590항 제591항 제592항 제593항 제594항 제595항 제596항 제597항 제598항 제599항 제600항 제601항 제602항 제603항 제604항 제605항 제606항 제607항 제608항 제609항 제610항 제611항 제612항 제613항 제614항 제615항 제616항 제617항 제618항 제619항 제620항 제621항 제622항 제623항 제624항 제625항 제626항 제627항 제628항 제629항 제630항 제631항 제632항 제633항 제634항 제635항 제636항 제637항 제638항 제639항 제640항 제641항 제642항 제643항 제644항 제645항 제646항 제647항 제648항 제649항 제650항 제651항 제652항 제653항 제654항 제655항 제656항 제657항 제658항 제659항 제660항 제661항 제662항 제663항 제664항 제665항 제666항 제667항 제668항 제669항 제670항 제671항 제672항 제673항 제674항 제675항 제676항 제677항 제678항 제679항 제680항 제681항 제682항 제683항 제684항 제685항 제686항 제687항 제688항 제689항 제690항 제691항 제692항 제693항 제694항 제695항 제696항 제697항 제698항 제699항 제700항 제701항 제702항 제703항 제704항 제705항 제706항 제707항 제708항 제709항 제710항 제711항 제712항 제713항 제714항 제715항 제716항 제717항 제718항 제719항 제720항 제721항 제722항 제723항 제724항 제725항 제726항 제727항 제728항 제729항 제730항 제731항 제732항 제733항 제734항 제735항 제736항 제737항 제738항 제739항 제740항 제741항 제742항 제743항 제744항 제745항 제746항 제747항 제748항 제749항 제750항 제751항 제752항 제753항 제754항 제755항 제756항 제757항 제758항 제759항 제760항 제761항 제762항 제763항 제764항 제765항 제766항 제767항 제768항 제769항 제770항 제771항 제772항 제773항 제774항 제775항 제776항 제777항 제778항 제779항 제780항 제781항 제782항 제783항 제784항 제785항 제786항 제787항 제788항 제789항 제790항 제791항 제792항 제793항 제794항 제795항 제796항 제797항 제798항 제799항 제800항 제801항 제802항 제803항 제804항 제805항 제806항 제807항 제808항 제809항 제810항 제811항 제812항 제813항 제814항 제815항 제816항 제817항 제818항 제819항 제820항 제821항 제822항 제823항 제824항 제825항 제826항 제827항 제828항 제829항 제830항 제831항 제832항 제833항 제834항 제835항 제836항 제837항 제838항 제839항 제840항 제841항 제842항 제843항 제844항 제845항 제846항 제847항 제848항 제849항 제850항 제851항 제852항 제853항 제854항 제855항 제856항 제857항 제858항 제859항 제860항 제861항 제862항 제863항 제864항 제865항 제866항 제867항 제868항 제869항 제870항 제871항 제872항 제873항 제874항 제875항 제876항 제877항 제878항 제879항 제880항 제881항 제882항 제883항 제884항 제885항 제886항 제887항 제888항 제889항 제890항 제891항 제892항 제893항 제894항 제895항 제896항 제897항 제898항 제899항 제900항 제901항 제902항 제903항 제904항 제905항 제906항 제907항 제908항 제909항 제910항 제911항 제912항 제913항 제914항 제915항 제916항 제917항 제918항 제919항 제920항 제921항 제922항 제923항 제924항 제925항 제926항 제927항 제928항 제929항 제930항 제931항 제932항 제933항 제934항 제935항 제936항 제937항 제938항 제939항 제940항 제941항 제942항 제943항 제944항 제945항 제946항 제947항 제948항 제949항 제950항 제951항 제952항 제953항 제954항 제955항 제956항 제957항 제958항 제959항 제960항 제961항 제962항 제963항 제964항 제965항 제966항 제967항 제968항 제969항 제970항 제971항 제972항 제973항 제974항 제975항 제976항 제977항 제978항 제979항 제980항 제981항 제982항 제983항 제984항 제985항 제986항 제987항 제988항 제989항 제990항 제991항 제992항 제993항 제994항 제995항 제996항 제997항 제998항 제999항 제1000항			

3. 자동차 이전등록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 22호서지]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간오피스텔)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동기설정, 가동기말소 등)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display: inline-block;">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 </div>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거래상대방 성명(법인명) <input type="text" value="빈칸"/> 주 <input type="text" value="빈칸"/> 주소 <input type="text" value="빈칸"/>	
위임받는 사람	성명 <input type="text" value="빈칸"/>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input type="text" value="빈칸"/>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1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15년 08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본인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제국인등록자는 제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초)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주민등록 제재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제국국적등록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제국인의 경우에는 제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 용도, 위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란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와 "제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법」에 따른 금융기관, 「제3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은행, 모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등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법무사)
-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취조 발표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직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각종 소지자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인감증명서로 남긴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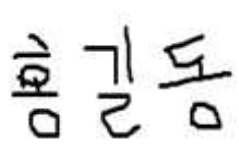
5. 보험금 청구

<small>■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지)</small> 문서확인번호 : 4677-1113-1079-559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간오피스텔)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동기설정, 가동기압소 등) 거래상대방 성명(법인명)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소 <input type="text" value="빈란"/>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삼성생명 보험금 청구용●</div>
위임받은 사람	성명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input type="text" value="빈란"/>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1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 2015년 08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본인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제국인등록자는 제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미주민등록 제1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제1국민등록번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제1국민의 경우에는 제1국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3. 용도, 위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관할 등),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관공리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은행, 모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란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중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 확인서를 취소 변경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공판에는 이상첨자 또는 한성첨자 표시와 원장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small>210mm × 297mm(복수용지 80g/m²)</small>	
<small>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제 12조제 2항에 따라 등록 신청자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small>	

6. 사망자 인우보증

<small>■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small>		
문서확인번호 : 4677-1113-1279-559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간오피스텔)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동기설정, 가동기말소 등)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 부동산 관련 용도 [] 그 밖의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빈란 빈란 주소 빈란
●사망자 인우보증(김철수)●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란 주소(자괴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란	
비고	빈란	
발급번호	No. 00000101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15년 08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 사항		
1. 서명은 작성자 소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체국인등록자는 체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미주민등록 체제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체국국민등록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체국민의 경우에는 체국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3. 용도, 위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체기구" 와 "체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합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은행, 모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란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등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취소 발표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small>*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제 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관련하여 등록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인감증명서로 남긴 것으로 본다.</s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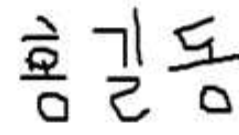
7.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677-1113-1279-559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서명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간오피스텔)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부동산 관련 용도	실명(법인명) <input type="text" value="빈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value="빈칸"/> 거래상대방명 <input type="text" value="빈칸"/> 주소 <input type="text" value="빈칸"/>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위임받는 사람	실명 <input type="text" value="빈칸"/> 주소(자괴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input type="text" value="빈칸"/>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1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 2015년 08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한 필체로 자신의 실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미주민등록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3. 용도, 위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책기관" 과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정기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법」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은행, 모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란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음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람의 실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실명과 자격증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부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공인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책임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제 13조제 2항에 따라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인감증명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8. 아파트 분양권 매도 시(등기소 제출 안함)

<small>■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small>		
문서확인번호 : 4677-1113-1279-5590		*이 용지는 워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간오피스텔)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빈칸 빈칸
	주소	빈칸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롯데아파트 분양권 매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칸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칸	
비고		
발급번호	No. 00000101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15년 08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소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미주민등록 제1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민등록번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제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3. 용도, 위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 거래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은행, 모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란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중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0000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첨부 발표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표면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계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착수용지 80g/㎡)		
<small>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제 12조제 2항 다음 소지자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small>		

9. 집을 구매 시(등기소 제출 안함)

<p>■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영문 시행령[별지 제 12호서지]</p> <p>문서화인번호 : 4677-1113-1279-559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p> <p style="text-align:center">본인서명사실확인서</p>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1, 1402호 (가산동, 공간오피스텔)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동기설정, 가동기압소 등)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r> <td>성명(법인명)</td> <td>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빈칸</td> <td style="text-align:center">빈칸</td> </tr> <tr> <td>주소</td> <td style="text-align:center">빈칸</td> </tr> </table>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빈칸	빈칸	주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빈칸	빈칸						
주소	빈칸						
●부동산 매수용●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칸					
	주소(자괴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고	빈칸						
발급번호	No. 00000101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15년 08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장							
유의사항							
<p>1. 서명은 작성자 본인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p> <p>2. 미주민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포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p> <p>3. 용도, 위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4. 부동산 관련 용도란 기재상대방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부" 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형태 또는 기관(공사공방 등), "지방권기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거래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란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p> <p>5.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중에 최종 제출 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법무사)</p> <p>6.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7. 비고란에는 이상첨자 또는 한성첨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p>							
210mm × 297mm (복수용지 80g/㎡)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영문, 제 12호서지 제 4항 소지자 기타관계 등록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본인 서명서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본인 서명서 인감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p>							

- 재외국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세무서장 경우
 - 미등록 재외국민, 재외국민 출국자(행정상관리주소 변경)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부동산 양도 후 출국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채권 일실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 경우
 - “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처리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조세 채권 일실 방지에도 기여